

도 「단계적 일상회복」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 변경 공고

「사회적 거리두기」 체계개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.

2022. 1. 17.

충청남도지사

1 처분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
- (벌칙·과태료·행정처분) 동법 제80조, 제83조, 동법 시행규칙 제42조

[감염병예방법]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,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3. 버스·열차·선박·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[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(행정처분의 기준)]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(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등 행정처분 실시)과 같다.

2 | 처분 사항

□ 기 간 : 2022. 1. 18.(화) 0시 ~ 2022. 2. 6.(일) 24시

- 1)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: 2022.2.7.(월) 05시까지 적용
- 2)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은 2022.1.18.(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□ 대 상 :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

*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

□ 처분내용 :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변경 적용

※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(6종)

-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영화관·공연장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도서관, 대규모점포 등*, 학원 등**

* 대규모점포 및 3,000㎡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

**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

□ 분야별 방역기준 (수칙 요약표)

-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은 별첨한 '기본방역수칙'과 아래의 각 시설별 '의무화 조치' 적용

※ 접종완료자 등*

- 1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: 다음의 접종완료자 등만이 시설 출입 및 모임 가능
 - ① 접종 완료자, ② PCR검사 음성자(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), ③ 18세 이하*, ④ 완치자 ⑤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
- 2)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(180일) : 1.3.(월)부터 시행(추가 접종하면 즉시 유효) / 계도기간 1주(1.3.월-1.9.일)
- 3) 12세~18세 방역패스 의무화 : '22. 3. 1.(화) 0시 ~ / 계도기간 1개월('22. 4. 1.~ 과태료 부과)

구분	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요 특별방역 강화조치
모임·행사	
사적 모임	▶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(접종여부 구분 없음)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e0e0e0; margin: 0;"><적용 제외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❶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 ❷ 아동(만 12세 이하)·노인·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❸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❹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의 체육시설에 경기, 시합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(사적모임 제한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(예: 풋살 최대 15명)

구분	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요 특별방역 강화조치
행사·집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1~49명)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 구분없이 가능 ▶ (50명~299명)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 시 가능
①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<small>(공통 : 마스크착용, 방역수칙 게시·안내, 출입자 명부관리,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, 환기3회, 소독1회)</small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유흥시설 <small>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)</small> ■ 콜라텍,무도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접종완료자, 완치자만 이용 가능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(유흥종사자 포함) ▶ (콜라텍·무도장)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노래(코인)연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실내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목욕장업 <small>(목욕탕, 찜질방, 사우나시설 등)</smal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카지노(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경륜·경정·경마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식당·카페 <small>(일반 휴게 제과 홀담뽕 등)</smal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 제한) 21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(식당·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) ▶ 접종미완료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
구분	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요 특별방역 강화조치
멀티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PC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▶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실내 스포츠경기 (관람)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파티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마사지업소·안마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* 단,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▶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가능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②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

(공통 : 마스크착용, 방역수칙 게시·안내, 출입자 명부관리,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, 환기3회, 소독1회)

결혼식장, 돌잔치, 장례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이용 가능 대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종 구분없이 49명 미만 -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명 미만 - (결혼식) 미접종자 49명+접종완료자 201명도 가능 ▶ (밀집도) 시설 면적의 4㎡당 1명,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놀이공원·워터파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용인원의 50%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▶ 식당 등 부대시설은 해당 시설 수칙 준수

구분	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요 특별방역 강화조치
오락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 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실외 스포츠경기 (관람)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용인원의 50%(접종완료자 등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,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%까지 입장 가능)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▶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, 취식 가능
실외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숙박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* 주최 자제 권고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이벤트룸 운영 및 바비큐 파티 등</p>
키즈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전시회·박람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49명 까지(접종여부 구분없음), 50명 이상(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등*으로 구성)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전시장 외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이·미용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국제회의· 학술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49명 까지(접종여부 구분없음), 50명 이상(참석자 전원 접종 완료자등*으로 구성)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
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▶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구분	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요 특별방역 강화조치
<p>학원 등 (교습소, 직업훈련기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(평생직업교육 학원으로 한정)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
<p>독서실, 스터디카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▶ 지정구역(푸드존 등) 외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p>도서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내 식당·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<p>박물관·미술관· 과학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▶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
<p>영화관·공연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 제한) 22시~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* 단,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·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 까지 운영(이용)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<p>상점, 마트, 백화점 (300㎡ 이상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, 수기출입명부 작성 - 대규모점포 및 3,000㎡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(예: 하나로마트)대상, 준대규모점포는 권고·전통시장 제외) ▶ 시식·시음·견본품(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) 서비스 금지
<p>종교시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% 가능(최대 299명) -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%(취식,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) ▶ 종교행사 최대 49명 까지(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299인까지) 가능 ▶ (소모임·성가대)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운영가능(취식,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)

구분	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요 특별방역 강화조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▶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요양병원 요양시설	▶ 종사자 선제검사 등 실시
사회복지시설	▶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대중교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마스크 착용 ▶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,
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실내 전체 +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▶ 위반시 과태료 부과(10만원) ※ 예방접종완료자 등 포함

3 기타 사항

1. 처분사유 : 코로나19 유행 양상, 감염병 통제범위,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·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
2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3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4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(300만원 이하의 벌금)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을 전면금지 되며, 손실보상금·재난지원금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참고1

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▣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17601(2021.5.28.), 18516(2021.6.11.), 18531(2021.6.11.)」에 따른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2021.11.1.(월) 0시부터 적용하지 않음

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1 적용 대상(시설)

○ (대상) 아래 '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적용 등 시설(33종)

■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: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,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(이용)시 ▲접종완료자와 ▲PCR음성확인자*, ▲예외자**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

* 접종완료자,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** 18세 이하인 자(2022.3.1.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, 계도기간: 2022.3.1.~2022.3.31.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, 인·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(종) 및 기타 미인가·미등록·무허가 시설의 경우,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

<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(33종) >

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(11종)

▲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
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실내체육시설 ▲ 목욕장업 ▲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

▲ 식당·카페 ▲ 멀티방 ▲ PC방 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내) ▲ 파티룸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

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(19종)

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 ▲ 오락실 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외)
▲ 실외체육시설 ▲ 숙박시설 ▲ 키즈카페 ▲ 돌잔치 ▲ 전시회·박람회 ▲ 이·미용업 ▲ 도서관
▲ 영화관·공연장 ▲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▲ 학원 등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
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

종교시설 및 기타시설(3종)

▲ 종교시설 ▲ 콜센터 ▲ 물류센터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2 적용 기간

- 2022년 1월 18일(화) 0시 ~ 2022년 2월 6일(일) 24시

<경과규정 등>

-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(18세 이하인 자 → 11세 이하인 자) 조치는 2022.3.1.(화) 0시부터 적용*(질병관리청 지침 준수)
 - * 계도기간: 2022.3.1.~2022.3.31.(1개월)
-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.2.7.(월) 05시까지 적용

3 방역 수칙

-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은 **【별첨】**의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, 아래 대상시설(15종)은 '추가적용 수칙' 함께 적용

◆ 대상시설

- ▲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
- ▲ 식당·카페 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목욕장업 ▲ 실내체육시설
- ▲ 학원(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) ▲ 영화관·공연장 ▲ 카지노(내국인)
- ▲ 오락실 ▲ 멀티방 ▲ PC방 ▲ 파티룸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
- ▲ 전시회·박람회 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

※ 별첨한 기본방역수칙과 상충되는 내용은 아래 '추가적용 수칙' 적용

- '콜센터', '물류센터'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'방역수칙'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

<추가 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(콜센터, 물류센터)>

★ 추가 적용 수칙

▲ 유흥시설 등 ▲ 식당·카페 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목욕장업 ▲ 실내체육시설
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
- 21시~익일 05시 운영중단
- (식당·카페)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(편의점* 포함)
- ↳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·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

○(이용자)

- 운영시간 제한 준수
- (식당·카페)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로만 이용(편의점* 포함)
- ↳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·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

*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, 자유업 포함

▲ 학원(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) ▲ 카지노(내국인) ▲ 오락실 ▲ 멀티방 ▲ PC방 ▲ 파티룸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*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22시~익일 05시 운영중단	○(이용자) - 운영시간 제한 준수
*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	
▲ 영화관·공연장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22시~익일 05시 운영중단*	○(이용자) - 운영시간 제한 준수*
* 단,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(이용)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24시 초과 금지	
▲ 전시회·박람회 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모임·행사 기준 적용* ↳ 50인 이상 행사 시 밀집도 제한(4㎡당 1명,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) 해제 - (전시회·박람회)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음성확인 및 접종완료(권고)	○(이용자) - 모임행사 기준 준수하여 참여
* 모임·행사 인원 상한(299명) 미적용	
★ 준수 의무사항	
▲ 콜센터	
○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 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-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-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 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	○(이용자) - 방역수칙 준수 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▲ 물류센터

-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 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
 -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
 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
 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
 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
 - 일 1회 이상 소독(소독대장 작성)
 - * 하역, 운반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, 작업화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
 -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 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
 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
 - 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

- (이용자)
 - 방역수칙 준수
 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4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, 같은 조 제2호의2, 제2호의4 및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- 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**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**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‘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’ 방역지침 준수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, 집합제한 조치(운영시간 제한, 시설 인원제한 조치*) 위반 시 고발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80조)

* 예시: 4㎡당 1명, 수용인원 50% 제한, 100명 미만 등

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(운영시간 제한 등)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*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,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	-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,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시설별 **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**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(또는 고발조치) 부과 → 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**추가 행정조치** 실시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

- 해당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
-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**

-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▣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17601(2021.5.28.), 18516(2021.6.11.), 18531(2021.6.11.)」에 따른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2021.11.1.(월) 0시부터 적용하지 않음

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1 적용 대상 등

① 사적 모임 제한(전국 6명까지 가능)

- (조치내용)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활동 금지
- (제한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- (인원산정) '6명의 범위'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은 제외

<사적 모임 적용 예외>

-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* 등이 모이는 경우
 - 동거가족 모임
 -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 -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 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

○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^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·행사는 아래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

- (1명~49명)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모임·행사가 가능

- (50명~299명)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·행사 가능

☞ 50명 이상 규모의 집회 등 모임·행사의 경우,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**전원(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동일 것)**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,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* 외 참여 금지 조치 必

* ^접종완료자 및 완치자, ^PCR 음성확인서 소지자, ^18세 이하인 자(2022.3.1. (계도기간: 2022.3.1.~2022.3.31.)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), ^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→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및 유효기간 등 제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- (300명 이상*)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300명 이상의 모임·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(지역)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·지자체의 사전 승인** 후 가능

*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(예외인정 범위 강화 가능)

**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주무부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신청 행사 승인기준 강화(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)

- (집회·시위) 인원제한*은 집합·모임·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

*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 신고 시 참가(예정) 인원(수)은 접종완료자 등의 인원 수로 함

○ 결혼식장, 실내·외 체육시설 등은 사적모임 제한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운영 가능

- (결혼식장) 위 인원제한(1~299명)을 동일 적용하되,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(혼합적용 불가)
- (실외체육시설) 사적 모임 제한(전국 6명)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 가능,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
- (실내체육시설)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(시합 등) 가능

< 적용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/ 결혼식장 등 종전 수칙 >

- ▲ (모임·행사예시) 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각종 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- ▲ (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)
 - (결혼식장_{취식O}) 최대 250명 가능(미접종자 49명+ 접종완료자 201명)
 - (전시회·박람회)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, 50명 미만 행사의 경우, 4㎡당 1명 밀집도 제한 준수
 - ※ 부스 내 상주인력 기준(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접종 완료자)은 권고수칙으로 적용
 - (국제회의·학술행사)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, 50명 미만 행사의 경우,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준수

○ 집합·모임·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

- (1명~49명) 모임·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'식당'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
- (50명~299명)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모임·행사 중 '식당'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
- (300명 이상)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한 모임·행사에서 취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

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제한 강화

-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,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

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·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* 및 기업의 경영활동*에 필수적인 모임·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하되,

- 50명 규모 이상인 경우,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단,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되는 각종 회의 등(상임위원회, 본회의 등 국회(지방의회)회의 포함)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

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·송출 등

- ④ 시험의 경우, 수험생 간 1.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

② 적용 기간

- 2022년 1월 18일(화) 0시 ~ 2022년 2월 6일(일) 24시

③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2호의2, 제2호의4 및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4 추진내용 및 절차 : 사적 모임

① (중대본)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(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(감염병예방법 제83조) 및 필요시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* 행정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

*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(예 : 자전거 동호회 모임)에 한함



④ (지자체)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,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 경고, 운영중단, 시설폐쇄 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,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	-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(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·운영자)의 준수사항

< 사적 모임 >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참석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7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7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7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, 사적 모임인지 확인 ▶ 위 ①,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7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7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
<p>※ 식당·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*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전국)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(‘접종완료자 등’과 동반 이용 불가) * PCR음성확인, 연령상 예외 등(18세 이하<2022.3.1.부터는 11세 이하(계도기간: 2022.3.1.~3.31.)>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)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○ 관리자·운영자는 식당·카페에서 2명 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 1명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,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	
<p>예시) 식당·카페 이용 예시</p>	
<p>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+접종완료자 등 0명 ⇒ 1명(O)</p>	
<p>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+접종완료자 등 1명 ⇒ 2명(X)</p>	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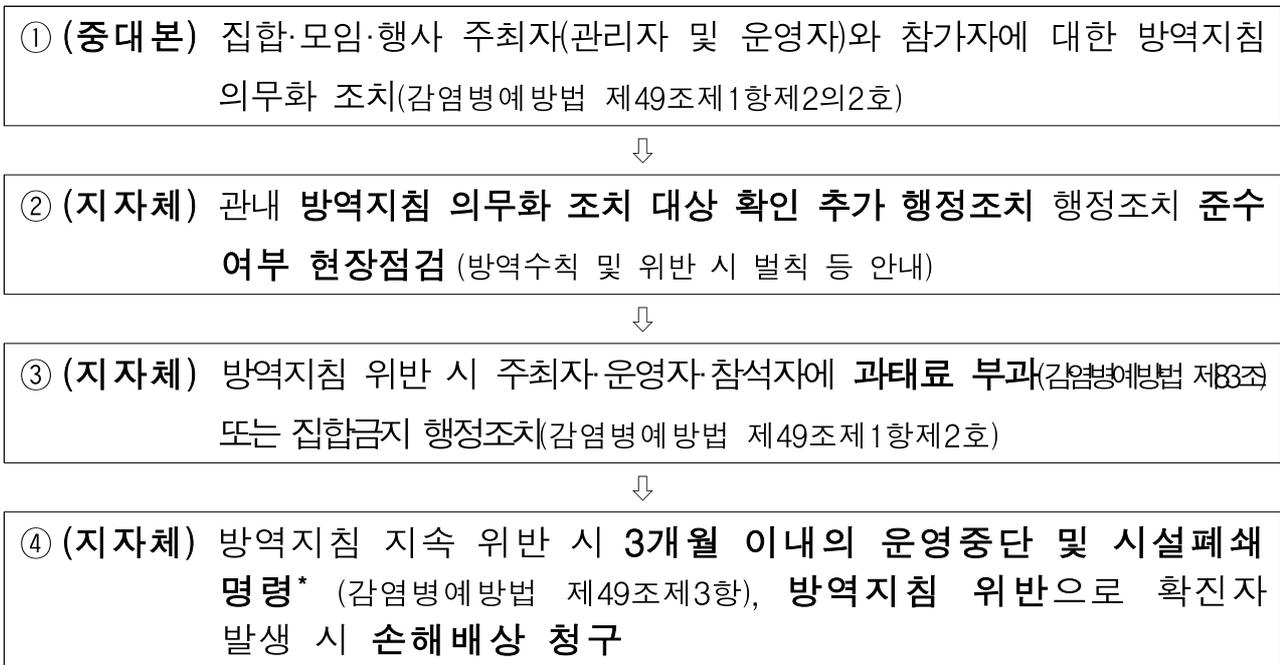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 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→ 벌칙 부과 등 조치

- ①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- ② 해당 모임·행사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- 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
-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5 추진내용 및 절차 :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



*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 폐쇄명령 가능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,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	-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 집합·모임·행사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명 이상 모이는 집합·모임·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·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

<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수칙 >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	
※ 내부 구성원만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(상임위원회 등 국회(지방의회)회의 포함)은 예외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0명 이상 모이는 모임·행사의 경우,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※ 50명째 참석자 부서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동일 것 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*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 포함 - (미완료자, 예외자)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PCR음성확인자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2) 예외자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등 ◦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확인 등 협조
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	
▶ 출입자 명부 관리(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)	
※ 내부 구성원만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(상임위원회 등 국회(지방의회)회의 포함)은 예외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
▶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(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)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다중이 모이는 집합·모임·행사의 경우,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▶ 기타(권고사항)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◦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 	-
※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② 각종 스포츠 대회, ③ (지역)축제 외 3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	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 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 등 조치 → 벌칙 부과 등 조치

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② 해당 모임·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

-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참고3

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□ (대상)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운송수단(국제항공편 제외)

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·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-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(국제항공편 제외)

※ 시군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

○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**

이용자 수칙

- ▶ 마스크 착용
- ▶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, 국제항공편 제외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참고4

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, 음성확인제 시행

□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· 음성확인제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방식

① 대상별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

대상자	발급방법(시행일시)	유효기간	확인방식
접종완료자 추가접종	1) 전자증명서(시행 중) * COOV, 네이버, 카카오톡 등 2) 종이증명서(시행 중) (예방접종증명서, 예방접종확인서) 3) 예방접종스티커(시행 중)	180일 (6개월) -	1)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*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)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*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)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
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	1) 종이증명서(시행 중) (격리해제확인서) 2) 전자증명서('22.1.1~)	180일 (6개월) -	1)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*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) 전자증명서 본인확인
PCR 음성 확인자	1) PCR 음성 결과통지서 1-1) 문자 통지서(~22.1월말) 1-2) 종이증명서(시행중) (PCR 음성 확인서) 2) 전자증명서('22.1월말~)	2일	1-1) 문자 통지서 *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-2)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*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) 전자증명서 본인확인
예외자* (의학적 사유) 기타 건강상 이유	1) 종이증명서(시행 중)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) 2) 전자증명서(시행중) * 중대한 이상반응만 해당	없음 180일 (6개월)	1)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*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) 전자증명서 본인확인

*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'22.1.1부터 가능

**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(본인 신분증으로 증명)

②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

구 분	접종완료자 (완치자 포함)	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		
		PCR음성	의학적사유	18세 이하 ¹⁾
유흥시설	○	×	×	×
경마·경륜·경정/카지노	○	○	×	×
실내체육시설	○	○	○	○
노래연습장	○	○	○	○
목욕장	○	○	○	○
입원자·입소자 면회	○	○	×	×
노인·장애인 이용시설	○	○	△ ²⁾	△ ²⁾
식당·카페	○	○	○	○
학원 등	-	-	-	-
영화관, 공연장	-	-	-	-
독서실, 스터디 카페	-	-	-	-
멀티방(오락실 제외)	○	○	○	○
PC방	○	○	○	○
(실내)스포츠 경기(관람)장	○	○	○	○
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	-	-	-	-
파티룸	○	○	○	○
도서관	-	-	-	-
안마소·마사지업소 ⁴⁾	○	○	○	○
대규모 점포(마트·백화점 등) (3,000㎡ 이상)	-	-	-	-
대규모 행사 (50인 이상 300인 미만)	○	○	○	△ ³⁾

- 1) 12~18세는 '22.3.1.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(12세는 2009.12.31.이전 출생자)
- 2)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(예: 12세 미만 등)
- 3)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~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
- 4) 「의료법」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·종사하는 안마시술소, 안마원은 제외